

---

연금저축손해보험 KB 계약이전연금보험(18.01)

- 적립형 -

약관

---

## 목 차

### 연금저축손해보험 KB 계약이전연금보험(18.01) 보통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연금의 지급)
- 제4조(주소변경통지)
- 제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6조(보험계약의 성립)
- 제7조(청약의 철회)
- 제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1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 제11조(보험나이 등)
- 제12조(계약의 소멸)
- 제13조(특별계정의 운용)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14조(보험료의 납입 및 한도)
- 제15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18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 제2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21조(해지환급금)  
제22조(보험계약대출)  
제23조(계약자 배당금의 지급)

#### 제6관 분쟁의 조정 등

- 제24조(분쟁의 조정)
- 제25조(관할법원)
- 제26조(소멸시효)
- 제27조(약관의 해석)
- 제2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제2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제30조(개인정보보호)
- 제31조(준거법)
- 제32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제도성 특별약관

-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 부 칙(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 【법규1】 개인정보 보호법
- 【법규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법규3】 보험업감독규정
- 【법규4】 보험업법
- 【법규5】 보험업법 시행령
- 【법규6】 소득세법
- 【법규7】 소득세법 시행령
- 【법규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법규9】 전자서명법

---

## 보험용어 해설

---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료**

-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 납입주기 별로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2)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성립 후부터 연금 지급개시전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년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 할 수 있는 보험료는 연간 납입하는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보장개시일** :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 세제혜택(연금저축)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 소득에 한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5년 이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
- 만 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주1)} \text{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주2)})} \times 1.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기산연차를 6년 차로 적용합니다.

##### 【연금지급기간】

가.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3월 1일 이후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 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 즉시	(가입후) 1년	2년	3년	4년	5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단,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 계약으로 이체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기는 이체 전 계약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나.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2월 28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 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 즉시	(가입후) 1년	2년	3년	4년	5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단,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 계약으로 이체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기는 이체 전 계약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다.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이후 즉시	(가입후) 1년	2년	3년	4년	5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단,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 계약으로 이체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기는 이체 전 계약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 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

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 ④ 제3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자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⑥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합니다.
- ⑦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⑧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 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종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 주요내용 요약서

---

###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첫 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3. 계약취소

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4.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14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5.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 기본계약 보험료중 다음 항목으로 사업비 등 공제되는 비율(또는 금액) 안내  
 (기준: 적립형 기준, 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월납, **보험료 30만원**)

구 분	목 적	시기	비 용
보험관계 비용	계약 체결 비용	판매보수 매월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0.00% (0원)
	유지보수	매월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0.00% (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이내 기본보험료의 <b>3.0% (9,000원)</b> 납입기간이후 거치기간중 책임준비금에서 2,500원
연금수령 기간중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2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도표 참조※

### □ 유지기간별 사업비 수준

(기준: 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월납, **보험료 30만원**)

10년이내	10년초과 20년이내
기본보험료의 <b>3.0%(9,000원)</b>	기본보험료의 <b>3.0%(9,000원)</b>

### □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 分	목 적	시기	비 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1.5%

### □ 해지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 이상
해지공제금액 (만원)	0	0	0	0	0	0	0	0
해지공제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 해지공제비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의 비율

## 보통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연금저축손해보험 계약을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은 **2.5%**입니다.
-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4. 보험료 관련 용어

- 가.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 납입주기 별로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성립 후부터 연금지급개시전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년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는 연간 납입하는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연금의 지급)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연금지급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정액으로 계산된 연금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기본연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참조)”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④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 이라 합니다)을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2. 회사는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3.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1.5%, 5년을 초과하고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3%를 적용합니다.
4. 세부적인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지침”을 따릅니다.

⑦ 회사는 제5항 및 제6항의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등에 매월 공시합니다.

####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가입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1.5%, 5년을 초과하고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3%)로 적립됩니다.

####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4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등이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5조(보험수의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의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6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이 보험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취급 금융기관 또는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퇴직연금”이라 합니다)계좌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전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 보험의 거치형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취급하여 함께 운용(계약의 해지, 변경, 이전 및 효력 등)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7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자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계약】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대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
2.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3. 기본보험료
4.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 개시 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보험의 거치형 계약과 함께 가입한 경우 거치형 계약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을 동일하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보험료 등의 감액 또는 증액시 연금액 및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연금액 및 환급금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 제1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3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이하『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에 한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5년 이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text{주1)}}{\text{한도액}} \times 1.2$$
$$(11 - \text{연금수령연자}^{\text{주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자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기산연차를 6년 차로 적용합니다.

### 【연금지급기간】

가.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3월 1일 이후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 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이후	가입 즉시	(가입후) 1년	2년	3년	4년	5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단,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 계약으로 이체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기는 이체 전 계약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나.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2월 28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 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이후	가입 즉시	(가입후) 1년	2년	3년	4년	5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단,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 계약으로 이체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기는 이체 전 계약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다.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 즉시	(가입후) 1년	2년	3년	4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단,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 계약으로 이체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기는 이체 전 계약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당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 1. 계약자의 사망

#### 2. 현재 · 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⑧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으로 합니다. 의료비인출로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의료비인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진되면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11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계약해당일】

최초계약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 계약일: 2018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10월 1일  
계약일: 2020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2월 말일

## 제12조(계약의 소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사망에 관한 세부규정】

이 보험에서 정하는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13조(특별계정의 운용)

- ①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 제4관 보험료의 납입

## 제14조(보험료의 납입 및 한도)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성립일 이후부터 납입한도 내에서 연금지급개시전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이 계약의 기본보험료의 납입한도(이체전 계약의 당해연도 납입액 포함)는 월납 150만원, 3개월납 450만원, 연납 1,800만원으로 하며,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15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2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후 책임준비금이 제4항에서 정한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 만큼 연기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월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 후 유지 관리 비용))을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의 경우 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 계약관리비용(납입후유지관련비용)의 경우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

서 공제하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연기 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6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18조(보험료 납입유예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납입유예 가능 시점(보험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 “납입유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기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에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조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납입후유지관련비용)]을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의 경우 보험료 납입주기별 계약해당일, 계약관리비용(납입후유지관련비용)의 경우 매월 계약해당일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⑧ 회사는 계약자가 납입유예 신청시 납입유예기간에 사업비가 차감되어 적립금액이 감소하고, 잔액부족시 납입유예가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보험료 납입유예신청서를 통해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제1호 또는 제2호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2.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퇴직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개인형퇴직연금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3. 암류, 가암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암류, 가암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6.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7. 제10조(계약의 세재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승계받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1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참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22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 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1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차감지급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계약자 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 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3조(연금의 지급)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이하 『증액연금』이라 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하 『가산연금』이라 합니다)
-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제 6 관 분쟁의 조정 등**

#### **제2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2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2018년 9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1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27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2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 제2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자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3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회사는 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 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3.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제3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2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도성 특별약관****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 중 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6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2조(계약후의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 부 칙 -

### 제1조(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 ①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계약자의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자는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판매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개시 이후에는 추가 납입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이하 "연금수령"이라 함)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 1. 계약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2.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신청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 - 연금수령연차)	100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산연차는 6년차부터 적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연금수령 외의 인출(이하 "연금외수령"이라 함)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 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제6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자가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한다.
1. 계약자의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표】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적 립 기 간	적 립 이 율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
	보험기간의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의 5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1년초과기간 : 1%
해지 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주) 1.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연금지급사유 발생일 이전에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사유 발생일까지는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 아래의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 【법규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07호, 2016.3.29., 일부개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3.29.>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

향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법규2】****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6.9.30.] [대통령령 제27522호, 2016.9.29., 일부개정]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법규3】****보험업감독규정**

[시행 2016.8.1.]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30호, 2016.7.28., 타법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3.22>

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제7-4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법규4】****보험업법**

[시행 2016.8.1.] [법률 제13453호, 2015.7.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18. (생략)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라. 주권상장법인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3.]

**【법규5】****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16.12.1.]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10.25., 타법개정]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4.3.24., 2016.3.11., 2016.5.31.>
1. 지방자치단체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삭제 <2014. 12.30.>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가. 외국 정부
    -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다. 외국 중앙은행
    -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본조신설 2011.1.24.]

## 【법규6】

### 소득세법

[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타법개정]

#### 제1조의2(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12.31.]

#### 제20조의3(연금소득)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법규7】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7653호, 2016.12.5., 일부개정]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개정 2015.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증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
  -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이하 생략)

**【법규8】****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30.] [법률 제14122호, 2016.3.29., 타법개정]**제16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제한)**

- ① (생략)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 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

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11.>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1.>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 ·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 · 분할 · 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 ·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 · 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 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5.3.11.>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 【법규9】

### 전자서명법

[시행 2014.10.15.] [법률 제12762호, 2014.10.15.,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이하 생략)

[전문개정 2001.12.31.]

---

연금저축손해보험 KB 계약이전연금보험(18.01)

- 거치형 -

약관

---

## 목 차

### 연금저축손해보험 KB 계약이전연금보험(18.01) 보통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연금의 지급)
- 제4조(주소변경통지)
- 제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6조(보험계약의 성립)
- 제7조(청약의 철회)
- 제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1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 제11조(보험나이 등)
- 제12조(계약의 소멸)
- 제13조(특별계정의 운용)

#### 제4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 제1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제16조(해지환급금)
- 제17조(보험계약대출)
- 제18조(계약자 배당금의 지급)

#### 제5관 분쟁의 조정 등

- 제19조(분쟁의 조정)
- 제20조(관할법원)

- 제21조(소멸시효)
- 제22조(약관의 해석)
- 제2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제2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제25조(개인정보보호)
- 제26조(준거법)
- 제27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 부 칙(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 보험용어 해설

---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료**

-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 납입주기 별로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2)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성립 후부터 연금 지급개시전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년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 할 수 있는 보험료는 연간 납입하는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보장개시일** :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 세제혜택(연금저축)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 소득에 한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5년 이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
- 만 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주1)} \text{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주2)})} \times 1.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기산연차를 6년 차로 적용합니다.

##### 【연금지급기간】

가.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3월 1일 이후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 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 즉시	(가입후) 1년	2년	3년	4년	5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단,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 계약으로 이체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기는 이체 전 계약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나.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2월 28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 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 즉시	(가입후) 1년	2년	3년	4년	5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단,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 계약으로 이체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기는 이체 전 계약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다.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 즉시	(가입후) 1년	2년	3년	4년	5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단,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 계약으로 이체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기는 이체 전 계약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 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 ④ 제3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⑥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합니다.
- ⑦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⑧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 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종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 주요내용 요약서

---

###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첫 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3. 계약취소

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4.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14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5.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 기본계약 보험료중 다음 항목으로 사업비 등 공제되는 비율(또는 금액) 안내  
 (기준: 적립형 기준, 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월납, 보험료 20만원)

구 분	목 적	시기	비 용
보험 관계비용	계약 체결 비용	판매보수 유지보수	매월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0.00% (0원)
	계약관리비용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0.00% (0원)
			납입기간이내 기본보험료의 3.5% (7,000원)
		매월	납입기간이후 거치기간중 책임준비금에서 2,500원
연금수령 기간중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2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도표 참조※

### □ 유지기간별 사업비 수준

(기준: 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월납, 보험료 20만원)

10년이내	10년초과 20년이내
기본보험료의 3.5%(7,000원)	기본보험료의 3.5%(7,000원)

### □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 分	목 적	시기	비 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1.5%

### □ 해지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 이상
해지공제금액 (만원)	0	0	0	0	0	0	0	0
해지공제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 해지공제비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의 비율

## 보통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연금저축손해보험 계약을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은 **2.5%**입니다.
-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을 제외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연금의 지급)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연금지급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정액으로 계산된 연금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기본연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참조)”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④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 이라 합니다)을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2. 회사는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3.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1.5%, 5년을 초과하고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3%를 적용합니다.
4. 세부적인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지침”을 따릅니다.

⑦ 회사는 제5항 및 제6항의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등에 매월 공시합니다.

####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가입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1.5%, 5년을 초과하고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3%)로 적립됩니다.

####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4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등이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5조(보험수의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6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이 보험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취급 금융기관 또는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퇴직연금”이라 합니다)계좌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전받은 금액은 이 보험의 일시납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합니다)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여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7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계약】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대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 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

2.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 개시 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3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에 한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5년 이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 한도액}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text{주1)}}{\text{11 - 연금수령연차}^{\text{주2)}}} \times 1.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기산연차를 6년 차로 적용합니다.

#### 【연금지급기간】

가.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3월 1일 이후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 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이후
50세이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최소 연금지급 기간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50세이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최소 연금지급 기간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이후	가입 즉시	(가입후) 1년	2년	3년	4년	5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단,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 계약으로 이체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기는 이체 전 계약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나.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2월 28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 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이후	가입 즉시	(가입후) 1년	2년	3년	4년	5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단,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 계약으로 이체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기는 이체 전 계약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다.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이후	가입 즉시	(가입후) 1년	2년	3년	4년	5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단,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 계약으로 이체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기는 이체 전 계약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⑧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으로 합니다. 의료비인출로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의료비인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진되면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1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계약해당일】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 계약일: 2018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10월 1일

계약일: 2020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2월 말일

### 제12조(계약의 소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 【사망에 관한 세부규정】

이 보험에서 정하는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13조(특별계정의 운용)

①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②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어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 제4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제1호 또는 제2호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2.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퇴직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개인형퇴직연금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6.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7. 제1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승계받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6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17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 (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 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14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차감지급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제18조(계약자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 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3조(연금의 지급)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이하 『증액연금』이라 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하 『가산연금』이라 합니다)
-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제 5 관 분쟁의 조정 등

##### 제1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2018년 9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1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23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 제2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25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회사는 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 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3.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제26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제27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부 칙 -

##### 제1조(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 ①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계약자의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자는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판매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개시 이후에는 추가 납입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이하 "연금수령"이라 함)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 1. 계약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 2.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신청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 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 - 연금수령연차)	100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산연차는 6년차부터 적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연금수령 외의 인출(이하 "연금외수령"이라 함)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 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제6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자가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한다.

1. 계약자의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표】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적 립 기 간	적 립 이 율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
	보험기간의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지 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연금지급사유 발생일 이전에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사유 발생일까지는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손해보험 KB 계약이전연금보험(18.01)

- 즉시형 -

약관

---

## 목 차

### 연금저축손해보험 KB 계약이전연금보험(18.01) 보통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연금의 지급)

제4조(주소변경통지)

제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7조(청약의 철회)

제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11조(보험나이 등)

제12조(특별계약의 운용)

#### 제4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1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제1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15조(해지환급금)

제16조(보험계약대출)

제17조(계약자 배당금의 지급)

#### 제5관 분쟁의 조정 등

제18조(분쟁의 조정)

제19조(관할법원)

제20조(소멸시효)

제21조(약관의 해석)

제2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2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24조(개인정보보호)

제25조(준거법)

제26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부 칙(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 보험용어 해설

---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료**

-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 납입주기 별로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2)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성립 후부터 연금 지급개시전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년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 할 수 있는 보험료는 연간 납입하는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보장개시일** :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 세제혜택(연금저축)

①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 소득에 한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5년 이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
- 만 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주1)} \text{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주2)})} \times 1.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기산연차를 6년 차로 적용합니다.

##### 【연금지급기간】

가.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3월 1일 이후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 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 즉시	(가입후) 1년	2년	3년	4년	5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단,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 계약으로 이체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기는 이체 전 계약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나.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2월 28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 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 즉시	(가입후) 1년	2년	3년	4년	5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단,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 계약으로 이체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기는 이체 전 계약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다.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 즉시	(가입후) 1년	2년	3년	4년	5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단,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 계약으로 이체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기는 이체 전 계약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 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

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 ④ 제3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⑤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⑥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합니다.
- ⑦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 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종종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 주요내용 요약서

---

###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첫 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3. 계약취소

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4.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14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5.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사업비 등 공제금액 안내표

\* 기본계약 보험료중 다음 항목으로 사업비 등 공제되는 비율(또는 금액) 안내  
(기준: 적립형 기준, 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월납, 보험료 20만원)

구 분	목 적	시기	비 용
보험관계 비용	계약 판매보수 체결 비용	매월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0.00% (0원)
	유지보수	매월	10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0.00% (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납입기간이내 기본보험료의 3.5% (7,000원) 납입기간이후 거치기간중 책임준비금에서 2,500원
연금수령 기간중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연금 수령시	연금연액의 0.25%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시	아래도표 참조※

### □ 유지기간별 사업비 수준

(기준: 남자 40세(60세 연금개시), 납입기간 20년, 월납, 보험료 20만원)

7년초과 10년이내	10년초과 20년이내
기본보험료의 3.5%(7,000원)	기본보험료의 3.5%(7,000원)

### □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 分	목 적	시기	비 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1.5%

### □ 해지공제 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 이상
해지공제금액 (만원)	0	0	0	0	0	0	0	0
해지공제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 해지공제비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의 비율

## 보통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연금저축손해보험 계약을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은 **2.5%**입니다.
-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연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연금 지급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정액으로 계산된 연금을 연금지급 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기본연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참조)”에 따릅니다.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 이라 합니다)을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2. 회사는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을 결정합니다.
3.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1.5%, 5년을 초과하고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3%를 적용합니다.
4. 세부적인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

한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지침”을 따릅니다.

- ⑥ 회사는 제4항 및 제5항의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등에 매월 공시합니다.

####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가입후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1.5%, 5년을 초과하고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단위 복리 0.3%)로 적립됩니다.

####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4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등이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시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6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이 보험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취급 금융기관 또는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퇴직연금”이라 합니다)계좌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합니다)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전받은 금액은 이 보험의 일시납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합니다)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여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7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 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계약】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 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1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액공제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3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이하『연금계좌 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에 한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단,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5년 이전 수령하는 경우도 포함)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text{연금 한도액}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주1)} \times \text{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11 - \text{연금수령연차}^{주2})} \times 1.2$$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합니다.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기산연차를 6년 차로 적용합니다.

#### 【연금지급기간】

가.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3월 1일 이후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 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가입 즉시	(가입후) 1년	2년	3년	4년	5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10년 이상	9년 이상	8년 이상	7년 이상	6년 이상	5년 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단,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 계약으로 이체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기는 이체 전 계약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나.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가 2013년 2월 28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 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①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②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③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이후	가입 즉시	(가입후) 1년	2년	3년	4년	5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단,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 계약으로 이체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기는 이체 전 계약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다.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계약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하여 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최소연금지급기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55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5세이후	가입 즉시	(가입후) 1년	2년	3년	4년	5년이후
최소 연금지급 기간	5년이상					

주1) 균등수령방식, 만나이 기준

주2)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는 계약 이체전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전액이 이 계약으로 이체되고 계약자가 이체전 계약의 가입일을 선택하는 경우 그 가입일로 하고, 그 외에는 이 계약의 가입일로 합니다. 단, 연금수령개시 이후 이 계약으로 이체되는 경우 계약체결 시기는 이체 전 계약의 가입일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 ⑤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 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⑥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합니다.

⑧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으로 합니다. 의료비인출로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의료비인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진되면 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11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 나이가 만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월 11일 = 30세

### 【계약해당일】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 계약일: 2018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10월 1일  
계약일: 2020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2월 말일

### 제12조(특별계정의 운용)

- ①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 『개별 특별계정』) 이라 하고, 1개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 제4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1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제1호 또는 제2호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2.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퇴직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개인형퇴직연금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 6. 계약자 나이가 만55세 미만이거나 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 7. 제10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승계받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 ⑥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1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5조(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 참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16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 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1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차감지급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계약자 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 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3조(연금의 지급)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이하『증액연금』이라 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이하『가산연금』이라 합니다)
-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제 5 관 분쟁의 조정 등**

##### **제1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2018년** 9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1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2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 **제2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협의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24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회사는 계약자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6조(수집 ·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 회사가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3.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제25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제26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부 칙 -

### 제1조(종전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 ①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계약자의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자는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판매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개시 이후에는 추가 납입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이하 "연금수령"이라 함)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1. 계약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신청일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평가액	×	120
(11 - 연금수령연차)	100	

\*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산연차는 6년차부터 적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연금수령 외의 인출(이하 "연금외수령"이라 함)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계약자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좌를 해지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 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해지가산세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계약자의 해외이주
5. 사업장의 폐업

6. 계약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7.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가 제6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종전 조세특례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계약자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자가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한다.

1. 계약자의 해외이주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 가. 200만원
-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⑨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적 립 기 간	적 립 이 율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의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해지 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1년이내 :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의 5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1년초과기간 : 1%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연금지급사유 발생일 이전에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사유 발생일까지는 「연금저축-1701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